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2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김도읍・구자근・백종헌

김정재 · 김예지 · 박형수

인요한 • 정희용 • 임호선

권영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제3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 략)	책무)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u><신 설></u>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친환		
	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		
	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